

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

#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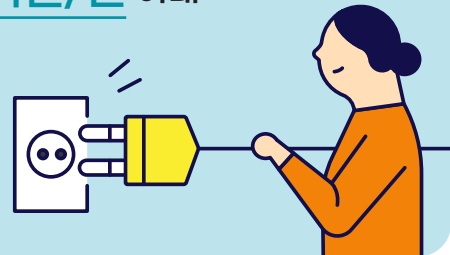
기업들이 탄소중립에  
참여할 수 있도록  
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 
지원합니다.

#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?



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(할당대상업체)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감축설비 설치 및 교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
- 01 지원대상**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민간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병원
- 02 지원설비** 탄소무배출설비, 폐에너지 회수·이용설비, 연료전환, 탄소포집설비, 고효율설비 등
- 03 지원규모** '25년 1,079억원
- 04 보조율** 설비투자비의 30~70%
- 05 지원한도** 사업장별 60억원/년, 업체별 100억원/년 이내
- 06 운영체계** 환경부 총괄 한국환경공단 위탁 수행





##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



- 지원대상 :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·중견기업, 유상할당 대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병원
- 보조율 :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, 공공기관, 학교, 병원 50%, 대기업 30%
- 지원분야 :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



##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



- 지원대상 : 주사업자(A)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(대기업 포함)
- **방법1** 부사업자(B)는 중소·중견기업(비할당대상업체 포함)
- **방법2** 부사업자(B)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·중견기업
- 보조율 : 50%
- 지원분야 :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(주사업자,A)가 다른 중소·중견기업(부사업자,B)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(단, 외부사업 인정 불가)
- **방법1**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차기·차차기 계획기간 사전 할당 시 A업체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
- **방법2** B업체는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일정기간 매년 A업체에 무상 이관, B업체는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



# 사업추진절차

## 1 사업신청

온실가스감축설비  
설치를 계획하여  
e나라도움에  
사업신청서 제출



## 2 사전검토

공단에서 감축량  
산정, 사후관리  
계획 등 검토

## 3 평가·심의

심의위원회에서  
사업의 타당성  
평가·심의 및 지원업체  
선정



## 4 협약체결

입찰계약 자가점검표,  
원가계산서 제출 및  
협약체결



## 5 계약체결 및 설비 설치

착수신고서 제출/승인,  
보조금 선금금 신청  
및 설비 설치

## 6 설치완료 및 준공확인

설치확인 현장점검  
및 감축량 검토, 보조금  
준공금 지급



## 프로그램 참여시 유의사항!

지원대상 선정이전에  
설비업체 및 시공업체와  
계약체결시 지원 불가합니다.

계약종류(물품, 용역 및 공사)에 따라  
기준금액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 
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이용  
또는 조달청에 요청해야 합니다.

사업이 완료되면 차년도부터  
3년간 사후관리를 수행해야하며  
매년 감축실적보고서를  
제출해야 합니다.

설비설치 확인일로부터  
5년간 승인없이 타인에게  
양도·처분하거나  
폐기·처분할 수 없습니다.

기업의 '탄소중립'  
환경부와 공단이  
함께합니다!

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, e나라도움  
NGMS 안내 확인 후  
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에  
사업신청서 제출!

